

약식 시장접근 중지에 대한 수정통보서

CME-18-0856

대상: 하나금융투자

CME 규정: 413조 약식 시장접근 중지 조치 (부분 발취)

413조 A항 시장접근 중지 조치에 대한 권한

CME그룹의 최고규제책임자 또는 그의 대리인은 거래소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함에 있어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선의의 판단을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1) CME그룹의 일부 또는 모든 시장접근 중지 2) Globex 플랫폼 접근 중지 3) CME그룹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여타 전자거래 또는 청산 플랫폼 접근 중지 4) CME그룹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시장플로어에서 즉시 퇴장.

조사 결과:

2018년 5월 21일, CME그룹의 시장규제부(이하 "시장규제부")는 최고규제책임자를 통해 CME Globex 전자거래플랫폼(이하 "Globex"), CME그룹이 보유 또는 관리하는 모든 여타 전자거래 혹은 청산플랫폼, CME그룹이 보유 또는 관리하는 모든 시장플로어 등을 포함하는 모든 CME Group 시장에 대한 하나금융투자(이하 "하나")의 직접 및 간접적인 시장접근을 즉각적으로 중단하였다. 이러한 시장접근 중지 조치로 하나 및 누구든 하나의 계좌를 통해서는 모든 CME Group 거래소 상품에서 모든 개인, 법인 등 독립체, 또는 계좌를 위한 매매거래, 주문, 및 매매거래에 대한 관리 및 지시가 금지되었다. 앞서 언급된 사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측 청산회사의 미결제보유약정은 하나 또는 하나의 고객의 요청 있을 시 해당 청산회사에 의한 청산이 허용되었다. 2018년 6월 13일에 최고규제책임자는 시장접근 중지 조치를 수정하여 하나가 고유 자기매매거래계정을 위하여 거래하는 것을 허용했다.

2018년 6월 13일 이후로 하나는 청산회사에게 각각 별개의 고객계좌 보유약정(포지션)을 총합하여 보고하고 (이러한 계좌는 독립적으로 소유 및 관리된다는 범위에서), 계좌 소유자 및 해당계좌를 통하여 거래권한을 인증받은 거래자 (주문 대리인)에 대한 정보와 시장규제부의 문의에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을 시장규제부에 입증하여 거래소의 규정을 준수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시장접근중지 조치:

이에 최고규제책임자는 본 조치를 수정하여 시장접근 중지 조치를 매매거래일 2018년 7월 6일에 종결한다.

발효일: 2018년 7월 6일